



대통령령 제20761호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2008. 4. 3

1. 개정이유

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특별대책지역에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폐수발생량에 따라 예비수질오염방지시설과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제3호 중 “제8항제2호”를 “제7항제2호”로 한다.

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,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[부 칙]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환경부령 제284호

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

2008. 4. 7

1. 개정이유

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하수법」(법률 제 7569호, 2005. 5. 31. 공포, 2005. 12. 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지하수오염유발

시설의 범위에 석유판매업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,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를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오염방지 조치명령완료통보 기한의 연장(안 제3조)

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출하는 조치명령완료통보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.

나.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확대(안 제4조 및 별표 2)

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석유판매업 시설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.

다. 정기 수질검사 제외대상(안 제10조)

생활용수·공업용수 및 농·어업용수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.

○ ○ ○ ○
환경부령 제285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08. 4. 17

1. 개정이유

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,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,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검사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(안 제85조, 제106조제2항 및 제3항)

(1)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이 짧아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


환경법규

- (2)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, 개선결과의 보고자를 종전의 자동차 소유자에서 확인검사대행자로 변경함.
- (3)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,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·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준수사항(안 제104조의2, 별표 30의2 신설)

- (1)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(2)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정밀검사 업무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,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함.
- (3)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·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,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

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

| 구 분 | 전 시 명 | 미국 수자원 전시회 (WEFTEC)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개 최 기 간 | | 2008. 10. 19 ~ 10. 22 |
| 장 소 | | 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 |
| 개 최 규 모 | | 1,017업체 참가 / 268,405sq.f |
| 전 시 품 목 | | 수질환경관련기기 및 제품 |
| 관 램 예 상 인 원 | | 전문 바이어 20,000여명 |
| 과 년 도 전 시 현 황 | | 1,017업체 / 19,929명 전문바이어 참관 |
| 한 국 관 참 가 규 모 | | 10업체(90m ²) |
| 행 사 주 관 | | 환경보전협회 |
| 참가업체 지원사항 | | 중기청 국고 보조(임차료, 설치비, 홍보물 등 일부보조) |
| 주 요 활 동 사 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보전협회 한국관 설치운영 -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 환경설비·기술·제품 홍보 및 바이어상담 - 양국간의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확대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환경기술 세미나발표 |

※참가문의 :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부 (☎02-2249-5265 교환 613, 617, 633)